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87

발의연월일: 2022. 10. 24.

발 의 자:김민석·강득구·강선우

고영인 · 김수흥 · 양정숙

이동주 • 이은주 • 임호선

최종윤 · 최혜영 의원

(11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·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는 데,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 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수탁기관은 차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여 노

인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서적·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(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 ~	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 ~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
	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
	담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한
	지원기구를 설치・운영할 수
	<u>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
	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